

| 2009. 8. 1 제27호 |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 목 차

#### < 요약 >

- I.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우리의 경쟁력 / 5
- II. 특허전문관리회사(NPE)와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의  
등장과 현황 / 8
- III. 한국에 대한 위협요인 / 14
- IV. 정책과제 / 17

참고문헌

「STEPI Insight」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 요약 >

### ◆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라는 관점보다는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됨
-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 특히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지식재산이 갖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분쟁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Patent Troll)의 등장은 연구계 및 산업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 특허전문관리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y)와 특허사냥꾼(Patent Troll)

- NPE 또는 Patent Troll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식재산을 금융자산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Invention Capital 모델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 ◆ 한국의 위협요인

- 한국은 R&D 40조원 시대를 앞두고, 투입 및 창출의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창출된 지식재산의 관리 및 활용 수준이 미흡함
  - IMD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2009년 기준 57개국 가운데 33위로 미흡한 수준임(기업의 정성적 평가가 크게 반영됨)
  - 기술무역수지 악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기준 2,421백만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중 6위의 R&D 투입국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술소비형 산업구조의 한국이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질적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 ‘총성없는 전쟁’으로 묘사되는 특허분쟁의 증가는 한국과 같은 기술시장의 특성을 갖는 상황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2003~2006년 기간 동안 특허분쟁은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76%가 NPE들에 의한 소송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국내 전자분야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LG는 NPE들에 의한 소송제기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주요 공격대상으로 자리함
- NPE들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R&D 기획에서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추가적인 비용 및 잠재적 비용을 야기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R&D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지식재산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NPE들의 적극적 매입활동 등으로 인해 국내 지식재산의 외부유출에 따른 손실이 우려됨

#### ◆ 정책과제

##### [과제 1] 범부처적 국가 지식재산 총괄 관리 기구의 수립을 통한 정책 일관성 및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적화함으로써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 총괄 관리 기구를 통해 NPE(Patent Troll) 현황과 NPE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제 2]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확대**

-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기술-법-경제’ 라는 3각 구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기획단계에서 선행 지식재산 조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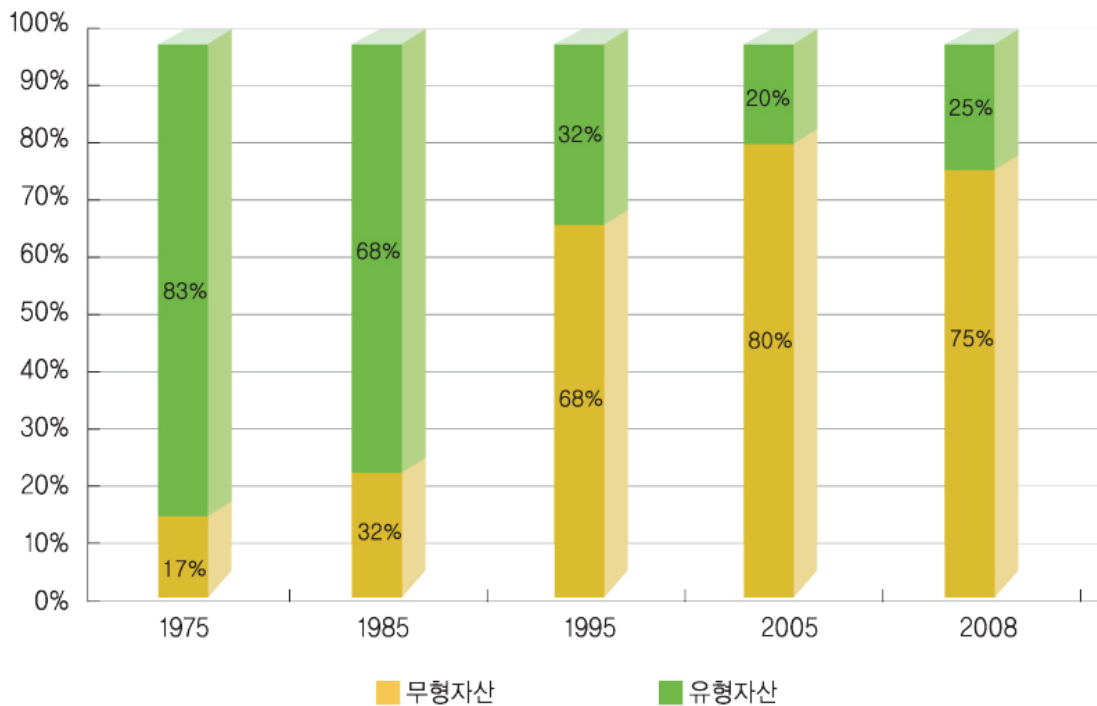
**[과제 3] R&D 활동 위축 또는 R&D 수행 주체들의 잠재적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식재산 소송 보험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 지식재산 가치의 인식과 더불어 관련 소송은 향후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제도 마련이 필요

## I.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우리의 경쟁력

- 지난 30여년간 글로벌 시장자산가치 구성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풍부한 자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국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무형자산의 주요 구성원인 인적자원과 지식자원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한국과 같이 천연자원 한계에 직면한 국가들의 경우 지식재산의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 기간 동안 시장 가치구성에 있어서 무형자산(지적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중은 강한 역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S&P Market Value 구성



자료 : Ocean Tomo(2009)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인식하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4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창출된 지식의 질적 수준 및 활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미흡함**

- 지난 10여년간 R&D 투입과 양적 성과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투자 및 특허출원 등이 OECD 국가들 중 상위권내로 진입함
  - ※ 연구개발투자는 OECD 국가들 중 6위, 연평균 성장률은 13.8%로 중국(15.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PCT 출원의 경우 2006년 기준 2,785건으로 4위(1985년 8건에 불과함) 수준을 보임(OECD, MSTI 200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활용이나 보호수준, 관리 인력의 전문성, 관련 서비스인프라 등에 있어서 경쟁 국가들에 비해 미흡함
  - ※ IMD가 평가한 과학인프라로서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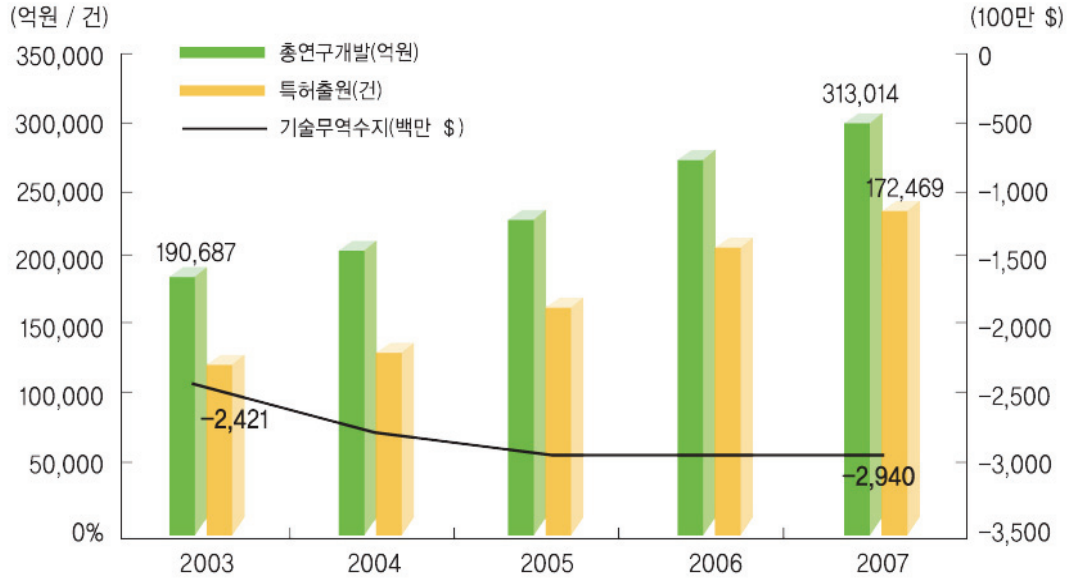
〈표 1〉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수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비교대상국가수	37/60	44/61	34/55	37/55	33/57
점수/10점	5.62/10	5.03/10	5.20/10	4.99/10	5.78/10

자료 :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 무엇보다도 기술무역수지 악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는 한국의 산업특성이 기술 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으나 원천기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요기술이 해외로부터 공급되고 있어 사용료(로열티) 부담이 높기 때문임
  - [그림 2]와 같이, R&D 투자 및 성과(특허출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OECD 조사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은 2,421백만달러 기술무역수지 적자국가이며, 미국은 28,178백만달러의 기술무역수지 흑자국가임

[그림 2]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추이



자료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DB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인식과 함께 ‘총성없는 전쟁’ 으로 명명되는 특허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 특허를 기반으로 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들 간 분쟁뿐 아니라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분쟁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의 등장과 이들의 무차별 특허매집 행동으로 분쟁의 위험요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 국내산업계 특허소송 현황을 보면 2000년(30건) → 2003년(51건) → 2005년(68건) → 2007년(1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에 따른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특허소송 현황 파악의 한계로 인해 발표되는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음)
  - ※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초래되는 법정 관련 비용은 3백만~5백만달러로 추정되며 만약 실패할 경우 야기되는 추가적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제시됨(美 IP Law Association, 2007년 기준)
- 특허분쟁 증가 원인은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음
  - 특허분쟁의 증가는 우선적으로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동종 업체들 간 기술적 격차가 줄어들어 따라 분쟁소지가 많아짐
  -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수익증대를 위한 로열티 확보 경쟁이 심화
  - 동종분야 타기업들의 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쟁이 활용
  - 특허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의 증가로 인해 분쟁 자체의 빈도가 증가

## II. 특허전문관리회사(NPE)와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의 등장과 현황<sup>1)</sup>

### ■ 시장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 관리 중심 비즈니스 기업이 증가함

- 지식재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 인식과 함께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제품의 생산, 제조, 판매 없이 특허라이센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들의 등장 및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음
  - 특히 "Patent Troll"로 명시되는 분쟁 제기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특허사냥꾼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에 따른 산업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NPE" 또는 "Patent Troll"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음
  - (i) 특허를 실시하지도 않고 실시할 의도도 없으면서 특허를 이용해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사람(경쟁자가 아닌 공격자)
  - (ii)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특허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권리자
  - (iii) 특허발명을 취득하여 자신은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를 위협하여 부당한 조건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권리자(특허권남용방지포럼, 2009)

### ■ NPE (Non-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

- Patent Troll 보다 다소 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업을 지칭함
  - Non-manufacturing patentee,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등의 유사 표현이 있음
  -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특허제도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Patent Troll과 기업의 무형자산을 금융

1) NPE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Patent Troll은 NPE의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인식되고 '특허사냥꾼 또는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반의 과정에 관련된 활동을 지칭하는 Invention Capital이 있음

〈표 2〉 NPE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구분	비즈니스 모델	개요
NPE	Patent Troll	자체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이 주요 목적이 아니며, 단지 다량의 특허를 매입·유지하고 있다가 관련 특허를 활용한 제품으로 큰 매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특허소송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아 수익 창출
	Invention Capital	아이디어 또는 특허를 매입하여 연구개발 또는 추가개발 등을 통해 특허로 발전시켜 라이선싱이나 특허매각을 통해 수익 창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 Patent Troll 모델

- 합의금 또는 로열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산업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하고 적정 로열티 수입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꾀함

<일반기업과 Patent troll의 소송에 대한 전략 차이점>

- 일반적인 기업 : 침해사건 발생 시, 특허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 Cross-license 또는 상호 "win-win" 전략으로 문제 해결
- Patent Troll : 공격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침해 사건 발생 시, 더 많은 합의금 확보를 목적으로 함

● Invention Capital 모델

- 기업의 지식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
- 아이디어 또는 특허를 매입하여 풀(pool)을 형성하거나 고도화를 통해 특허 권리성을 강화하고 라이선싱 등의 수익모델에 적용
- 컨설팅 주력 모델의 경우, 특허 권리자와 수익을 나누는 모델(대부분 1:1 수익배분)로 특허관리 능력이 부족한 연구기관의 특허컨설팅 및 기술 재테크 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
- 단, 수익분배구조 왜곡의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특허와 같은 성과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

### ■ Patent Troll (특허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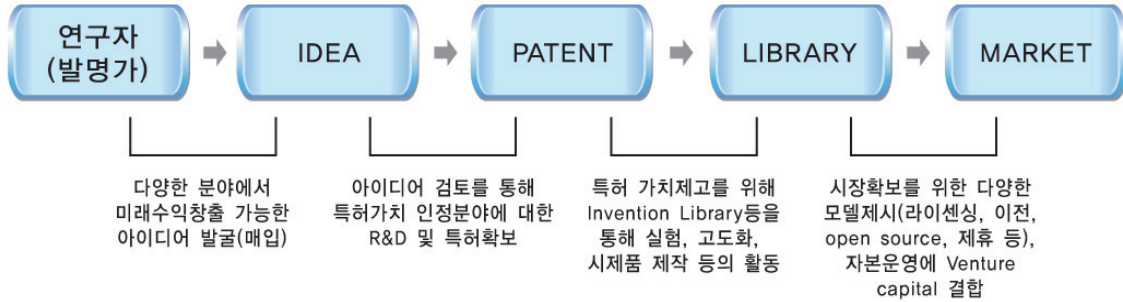
-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침해소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을 상대로 침해 가능성을 부당하게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제기하여 합의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됨
  - 특허를 활용하여 자체 생산이나 시장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들의 침해 제기는 때로는 뚜렷한 증거없이 이루어지기도 함
  - 제조 또는 연구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합의금 또는 로열티 수익을 얻음
  - 실패한 벤처를 인수하고 라이선싱 가능한 특허를 선별한 후, 이를 활용하여 로열티 수익을 얻음
  - 특정분야 특허를 매집하여 특허 독점력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
  -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수준의 로열티를 넘는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책정
- 역사적 사례
  - 1993년 공격적인 특허소송 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됨
  - “The Patents Video”(1994)가 실제 Patent Troll로 기록된 첫 번째 사례임
  - 부정적 의미로서의 ‘Patent Troll’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2001년 Intel 사내 변호사인 Peter Detkin이 소송상대방을 일컬으면서 사용되기 시작함
- 현황
  - 활동 중인 세계 6대 Patent Troll : InterDigital(통신분야 세계 최대), NTP(IT분야 10년간 665개 청구), ForgentNetworks(인수합병전략), TechSearch(파산기업 특허인수), Eolas Technology(대학특허인수), Mercexchange(Business model 중심)
  - 잠재적 Patent Troll : Acacia Research(IT와 BT 공략), Intellectual Ventures(IT 및 BT, NT, 네트워크 분야 공략), Ocean Tomo(지적자본투자은행 개념), BTG(BT분야, 영국)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매우 높음
- 사례 : Intellectual Ventures 모델
  - 주요 비즈니스 모델 : (i)기업 또는 개인 아이디어의 발굴 및 투자, 자체 아이디어 개발 및 자금화 등 회사 내외의 모든 아이디어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 (ii) 대학 연구실 투자(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특허권은 그것을 발명한 발명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계약상 전용실시권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특허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취함), (iii)가변전략 (사회, 문화, 시장동향에 따라 전략의 변화가 다양함)

- 현재 자회사를 통한 지식재산 관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 ※ 널리 알려진 Intellectual Ventures 자회사 : Ben Franklin Patent Holding, Searete LLC, CORPS of Discovery, Zen Corp, Curley Company 등
- Microsoft, Intel, AT&T, General Electric, Cisco, Hewlett-Packard, Onyx Software, Ocean Tomo, IP Value, Intertrust, Microvision, Vigilos, McKinsey&Company, Freescale Semiconductor 등의 주요 기업 및 공공 연구 기관 등도 Intellectual Ventures의 협력업체 및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음
- 자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구체적인 보유 특허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허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1년 설립 이후 2005년까지 22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이후 매년 300여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sup>2)</sup>
  - 최근까지 약 2만여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업무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장 판매에 이르는 지식 재산 관련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단계를 갖고 있음
  - 특히 미래 경제적 가치 창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시장에서의 가치 제고를 위한 Library 단계 등은 전략적 IP 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Patent Troll 기업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IP의 전략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2) Bruce Bahlmann(2007), 「Intellectual Ventures Company Research」 참조

[그림 3] Intellectual Ventures의 업무과정



- 글로벌 지식재산 매집활동을 위해 3가지 유형의 펀드를 운영하며 펀드에 따라 상이한 관리규정 및 지침을 마련
  - IIF1 & IIF2(transaction based) : 단순 거래 중심의 펀드로서 중개기능을 위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짐(전문인력 규모 : 250명)
  - IDF(relationship based) : 관계중심의 펀드로서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연계형 펀드로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술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짐(전문인력 규모 : 131명)

<표 3> IDF의 지역별 전문인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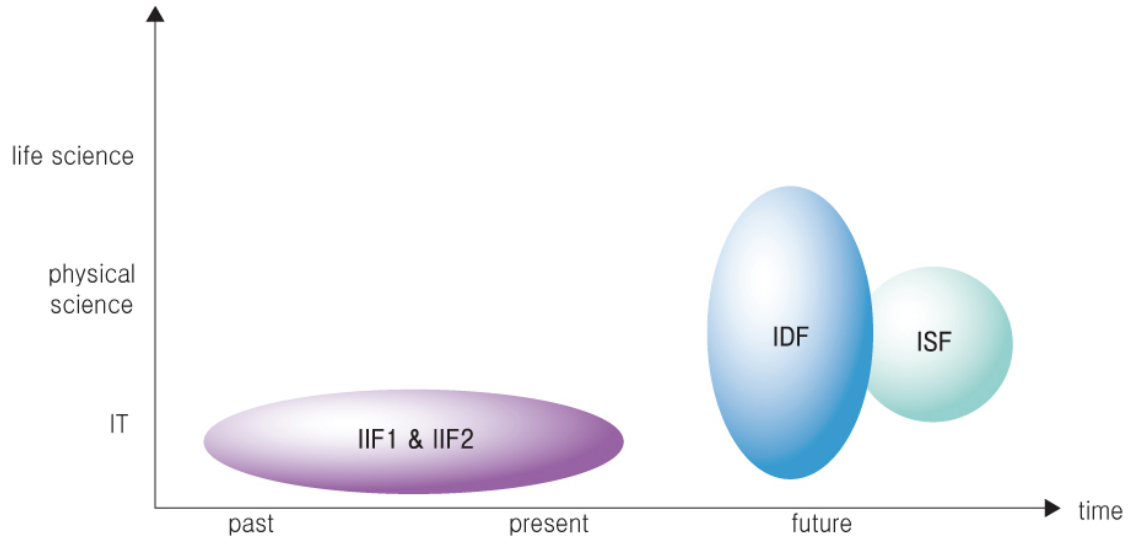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역	시애틀	밴쿠버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인도	서울	소계
인원수	28	2	18	17	22	16	28	131

자료 : Intellectual Ventures India(2009)

- ISF(builds ideas) :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관리하고자 하는 펀드로서 연구자들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매입하여 미래 기대수익 가치가 높은 기술로 발전 시킴(전문인력 규모 : 70명)
- 분야별 투입 펀드 및 시기
  - IIF1 & IIF2는 주로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투자모델로서 IT 분야에 중점 투자
  - IDF는 향후 중요한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서 IT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
  - ISF는 미래 기대수익창출을 위한 투자 모델로 아이디어 매입 등의 활동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분야 등에 투자

[그림 4] Intellectual Ventures사의 투자펀드 유형별 특성



자료 : Intellectual Ventures India(2009)

### Ⅲ. 한국에 대한 위협요인

####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기침체 환경에 있어서 NPE들의 국내기업 공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허소송에 대한 방어 전문회사(Defense Patent Aggregation)인 RPX corporation의 「경기침체가 NPE 소송에 미치는 영향(2009)」 분석결과에 따르면 닷컴 시장이 붕괴된 2003~2006년에 들어서면서 NPE의 목표대상이 미국의 기술회사보다는 아시아의 기술회사에 치중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위협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분석대상은 미국의 기술회사 10개(IBM, Microsoft, Cisco, Oracle, Intel, Qualcomm, Sun Microsystems, Apple, HP, Western Digital)와 아시아의 기술회사 10개(Canon, Toshiba, Sony, Panasonic, Hitachi, Fujitsu, Sharp, Samsung, Seiko-Epson, NEC Corp.) 등
  - ※ 2003~2006년 기간은 닷컴 기업시장의 폭락이 몰아친 4년(the four-year period following the dot-com market crash)으로 이 시기 NPE가 기술회사에게 낸 특허소송 건수의 추이는 미국 기업 123건(평균 증가율 16%), 아시아 기업 201건(평균 증가율 38%)으로 조사됨
- 1985년 이후 NPE에 의한 소송 제기가 산업계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소송 건수의 75%가 2003년 이후에 발생함<sup>3)</sup>
  - 미국 통신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에 실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3~2008년(6년) 기간 중 특허소송 건수는 총 329% 증가하였으며, 이 중 NPE에 의한 특허소송건수는 76%를 차지함
  -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소송 제기가 위협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표 4〉 참조)
    - ※ 대표적인 Patent Troll 중 하나인 인터디지탈(InterDigital)은 삼성전자에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67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동일 특허를 활용하여 LG전자로부터 2006~2008년 기간 동안 2억 8,500만달러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함
    - ※ Rambus는 하이닉스를 상대로 D램 특허 침해로 1억 3340만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함

3)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2008)

〈표 4〉 NPE에 의한 소송제기 대상기업 추이

(단위 : 건)

순위	기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	Samsung	5	3	8	13	9	38
2	Microsoft	3	5	6	11	9	34
2	Motorola	1	6	4	12	11	34
4	HP	6	3	4	9	10	32
5	AT&T	2	2	6	14	6	30
6	Sony	3	7	4	8	7	29
6	LG	-	7	3	11	8	29
8	Apple	4	3	3	11	7	28
8	Dell	4	3	7	9	5	28
8	Nokia	2	7	3	9	7	28
11	Matsushita Electric	5	8	4	6	4	27
12	Toshiba	4	5	4	9	4	26
13	Time Warner	-	6	6	8	5	25
14	Verizon	1	3	3	13	4	24
15	Sprint Nextel	2	2	3	11	4	22
16	Palm	1	3	3	5	9	21
17	Cisco	-	3	-	12	5	20
17	Intel	1	9	2	1	7	20
17	T-Mobile	-	5	2	11	2	20
20	Kyocera	3	6	3	4	3	19

자료 : PatentFreedom(2009)

■ Patent Troll을 중심으로 특허의 공격적 활용으로 인해 R&D 기획에서부터 성과관리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함

- 특허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특허탐색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R&D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외부 환경대응을 위한 부가적 비용 증가
  - 특허권 실시료(로열티) 증가에 따른 R&D 및 생산비용 증가
  - 장래 발생할 소송비용의 증가라는 잠재적 리스크 증가
- 이와 같이 특허탐색, 특허 실시료, 소송비용 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R&D 활동에 위축을 가져옴

■ 국내 R&D 성과물(지식재산)의 외부 유출 위험이 증가함

- 국내 연구진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NPE의 적극적 매입으로 인해 권리성 손실 우려가 있음

- Intellectual Ventures사는 아시아 허브를 싱가포르에 두고 본격적인 아시아 지역 특허매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국내기업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보유한 아이디어 매입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국내 우수 아이디어 유출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Intellectual Ventures사는 국내 주요 8개 대학으로부터 268건의 특허를 매입하였으며, 연구진의 아이디어에 대한 현금매입(1건당 1천만원)으로 인해 상당수의 아이디어를 이미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2009년 3월 기준)

- 이러한 Intellectual Ventures와 같은 NPE들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이 특허남용방지 가이드라인 및 대응 지원체계 수립 등을 통해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률적 접근에 치중, 산발적 추진과 자원의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용이하지는 않음



## IV. 정책과제

### 과제 1 범부처적 국가 지식재산 총괄 관리 기구의 수립을 통한 정책 일관성 및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적화함으로써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분산되고 중복된 사업운영 등으로 인해 지원의 비효율성이 발생
    - 인력과 예산을 집적화함으로써 지원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가 R&D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
  - 지식재산과 시장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은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 단순히 R&D 성과물로서의 지식재산이 아닌 시장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자본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 ※ 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총괄적인 사업본부를 미국은 상무부, 일본은 경제 산업성, 독일은 연방기술경제부 산하에 두고 있음
- **총괄 관리기구를 통해 NPE(Patent Troll) 현황과 NPE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NPE의 시장규모와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 연구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기능을 수행
    - 특히 외부로 유출되는 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정책에 의한 방지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R&D 활동 인력들의 인식이 중요함
  - 국내외 산업 피해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대한 경보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과제 2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확대

-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기술-법-경제’ 라는 3각 구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이러한 3각 구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축적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
    -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 과정의 한계점 인식과 개선 방안이 접목되어야 함
  - 글로벌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성된 전문인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필요
    - R&D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주체들의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들의 맞춤형 코칭 시스템이 필요
- 지식재산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기획단계에서 선행 지식재산 조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
  - 지식재산 조사를 위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R&D 수행 주체들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R&D 성과제고 및 보호를 위해 공공 지원 성격의 선행 지식재산 조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과제 3 R&D 활동 위축 또는 R&D 수행 주체들의 잠재적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식재산 소송 보험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 지식재산 가치의 인식과 더불어 관련 소송은 향후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제도 마련이 필요
  -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소송은 기업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초래

-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은 관련 법률비용이 매우 높아 국내 기업들의 기업 유지 자체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초래되는 법정 관련 비용은 3백만~5백만달러로 추정되며, 만약 실패할 경우 야기되는 추가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제시(美 IP Law Association, 2007년 기준)

- R&D 활동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비용 보험제도 개발이 필요
  - 지식재산 소송 관련 보험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미 지난 20여년 동안 발달되어 온 분야로 지식재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관련 서비스산업 중 가장 필수적인 분야로 제기
  -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관련 보험 프로그램 공급이 이상적이지만 국내 지식재산 시장환경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한시적으로 공공 지원 인프라로서 관련 보험환경 조성이 필요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내부자료

나상권(2008), “지재권 괴물의 동향보고”, 산업기술시장 이슈리포트 2008-03, 한국기술거래소  
특허권남용방지포럼(2009), 「특허권남용방지지침」

국가과학지식정보서비스(NITS) DB (www.ntis.go.kr)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2008), “A New Tool for a New Kind of Patent Adversary”

Intellectual Ventures India(2009), “Invented in India”, WIPO conference

Ocean Tomo(2009), 내부자료

OECD(2008),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PatentFreedom(2009), 내부자료

## STEPI Insight 보고서 리스트

-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2007.1.2)
-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2007.2.26)
-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 (2007.4.12)
-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2007.5.14)
- 제5호 : 중소기업의 脫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2007.6.8)
- 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2007.12.28)
-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2008.5.30)
- 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 (2008.6.16)
- 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2008.8.6)
-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2008.8.22)
-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2008.9.30)
-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 (2008.12.10)
-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09.1.1)
-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 (2009.1.15)
-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2009.2.1)
-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 (2009.2.15)
- 제17호 : 글로벌 相生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 (2009.3.1)
-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2009.3.15)
-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 (2009.4.1)
-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 (2009.4.15)
-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9.5.1)
-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2009.5.15)
-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 (2009.6.1)
-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2009.6.15)
-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 (2009.7.1)
-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 (2009.7.15)
-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2009.8.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http://www.stepi.re.kr)) 내 『STEPI Insight』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Leading Think Thank”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자 손수정**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기술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  
(E-mail : sjsohn@stepi.re.kr / TEL : 02-3284-1894)

· 주요경력 ·

2005.12-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 8-2005.11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 주요연구실적 ·

손수정(2006), 「지식재산권 공동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2006), "Choosing the Partner in the Licensing Alliance",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손수정(2007),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위한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가이드라인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2008), "Two contrary effects of Imitation", Economic Modelling, 25.

:: STEPI Insight 제 27호 ::

---

| 발 행 인 | 김석준  
| 편 집 인 | 김석준  
| 발 행 일 | 2009년 8월 1일  
| 발 행 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서울라09680  
| 주 소 | 156-849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 ,27F  
| T E L | 02)3284-1835  
| F A X | 02)3284-1896  
| 인 쇄 처 | 정인I&D (T:02.3486.6791~6)

